



언론보도 설명자료

담당 부서	연구소운영지원팀	이정직 팀장	(02-3460-9111)
홍보 담당	기획홍보팀	송현주 팀장	(02-3460-9093)

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관련, 사후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- 매일경제('24. 10. 19) 보도 관련

1. 주요 보도내용

- 「R&D예산 늘려놨더니...‘유령 연구소’ 3000곳」, 「택시회사가 R&D한다며 탈세...주식리딩방 운영」 등의 기사에서,
 - R&D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빼먹는 ‘유령연구소’가 약 3,000 곳에 달하며,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도 늘어

2. 설명내용
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이하 산기협)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·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과기정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현재,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연구조직은 '24년 9월 말 기준 78,579개소에 달하고 있으며, 인정 조직에 대해서 매년 연구활동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인정 요건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사항 확인, 연구소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- 특히,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확인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, 현지 확인 결과 부적격 연구소에 대해서는 보완 및 취소절차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* 현지 확인 규모 : ('22년) 15,391건 → ('24년) 30,000건 예정

- 또한,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기준 또는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.
 - 기업부설연구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함으로써 R&D 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, 1년간 설립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

[최근 3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현황]

(총 19,724건) 기업 자진취소 13,266건, 인정기준 미달 3,342건,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허위신고 233건, 준수사항 위반 등 2,883건

- 이와 함께, 기업부설연구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단독 법률안 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, 기업부설연구소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[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 연구소 관리강화 주요 내용]

-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
-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취소
- 인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취소 요청에서 제외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거나,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등과 관련된 제출서류(신고서류, 실적보고서 등)의 대리 작성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

- 앞으로도 산기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·관리 강화에 노력하고,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.